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운영규정

[시행 2023.3.1., 제정 202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참여확약서”란 학생연구자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간에 체결한 확약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

제2장 책임과 의무

제4조(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 체결, 상해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부담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한다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한다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6조(학생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담회수 금지(미지급 포함),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금지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참여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학생연구자 권리보장)

1.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2.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1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 월 1,8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5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300,000원

제12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미지급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강원도립대학교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강원도립대학교 인권센터 등 학내 관련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2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